



2024학년도 출결 관리 규정 안내

교무실 834-1297
행정실 834-0560

본교 출결 관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살펴보고 사유 발생 시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제출서류	비고
출석 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연간 15일 이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제출: 체험 3일 전 ▶ 보고서 제출: 체험 후 7일 이내 ▶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에서만 가능 ▶ 15일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
	경조사 결석신고서 (청첩장 또는 기타 확인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기준 · 결혼: 형제, 자매, 부, 모(1일) · 사망: (외)조부모, 부모(5일) (외)증조부모(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1일) · 입양: 본인(20일)
	법정감염병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감염병 예시 코로나, 독감, 결핵,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
질병 결석	질병 (1~2일) 결석신고서	▶ 5일 이내 서류제출
	질병 (3일 이상)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자료)	▶ 5일 이내 서류제출
	미세먼지 민감군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된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 ▶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결석 증빙을 갈음함
기타 결석	담임교사와 상의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미인정 결석	담임교사와 상의 ▶ 태만, 가출 / 고의적 출석 거부 / 교외체험학습기간 초과 / 학생 징계로 인한 결석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	

2024학년도 출결관리 규정

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며, **모든 종류의 결석은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출석인정 결석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증빙자료 제출

-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을 대표한 대회,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증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생리인정결석 월 1일)
- 바)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결석신고서+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구 분	대 상	일 수	비 고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17조제5항에 따라 피·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사유로 참석하는 경우
- 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 4호, 제5호에 따라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석

2) 질병 결석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증빙자료 제출

가) 1~2일의 단기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3일 이상의 장기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의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라)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3) 미인정 결석 -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출석 정지
-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라)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마)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15일)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 바)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등

4) 기타 결석 -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본교 결석신고서 양식은 학부모 의견서를 겸함.

나. 지각, 조퇴, 결과

- 1) 지각: 1교시 수업 시작 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3) 결과: 수업시간에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더라도 1회로 처리)
-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다. 학년 수료

-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 3) 위의 2)항의 경우 당해 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 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가. 개인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개인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하며,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

나. 단체교환학습: 2주일 이내(단,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 인정)

다.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 1) 보호자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됨. 교외체험학습 15일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됨
- 2)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3)교외체험학습 절차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적어도 3일 전(토,일,공휴일 제외)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통보서 혹은 문자 확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4)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 5)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ompanied Minor)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6)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하여야 함. 통화에 응하지 않을 시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안전을 확인함.**
- 7)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되
감염병 위기 경보 '관심,주의,경계'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은 사용이 불가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정원외 학적 관리

가. 정원외 학적 관리의 대상

- 1) 입학 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미인정유학 포함)

나.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 출결 관리에 필요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4. 3. 4.

이 리 석 암 초 등 학 교 장